

◆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-167호

() ()
[4 ()]

돈화문로 일대 외 4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내 ‘역사문화적 건축물 및 장소의 보전·활용 계획’ 변경(안)에 대하여 2021년 제5차 서울특별시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 심의(2021.03.24.)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을 결정(변경)하고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,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2021년 4월 1일
서울특별시 장

I. 결정 취지

- 「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기존 서울특별시 한옥밀집지역에 대한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이 결정(2020.12.24.)됨에 따라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한옥 등 건축자산에 대한 특례 적용이 가능하도록 기존 한옥밀집지역에 기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 및 시행지침에 적용이 필요한 완화계획 반영을 위해 돈화문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4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역사문화적 건축물 및 장소의 보전·활용 계획을 일부 변경하는 사항임.

II.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
① 역사문화적 건축물 및 장소의 보전·활용 계획 변경 대상 지구단위계획구역

순번	관할구	구역명	위치	면적	비고
1	종로구	돈화문로 지구단위계획구역	종로구 돈화문로, 을지로 주변	147,860	2010.02.25.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-65호
2	종로구	익선 지구단위계획구역	종로구 익선동 156번지 일대	31,121.5	2018.05.10.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-142호
3	종로구	인사동 지구단위계획구역	종로구 견지동, 관훈동 일대	124,068	2009.12.10.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-497호
4	종로구	운현궁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	경운동, 윤니동, 익선동 일대	147,809	2013.06.13.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-182호
5	종로구	경복궁서측 지구단위계획구역	경복궁서측 일대 (채부동 외 14개동)	582,297	2016.07.14.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-201호

②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

○ 역사문화적 건축물 및 장소의 보전·활용 계획 결정(신설)

구분	구역명	기정		변경	
		적용지역	계획내용	적용지역	계획내용
한옥 등 건축자산 보호 및 활용	돈화문로 지구단위계획 구역	-	-	지구단위 계획구역	- 한옥 등 건축자산이란 「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대상을 말하며, 본 구역에서는 “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(돈화문로 일대 등 8개 한옥밀집지역)”의 한옥 등 건축자산을 대상으로 한다. -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한옥 등 건축자산 보호·활용 시 「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1조(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건축물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)에 근거하여 완화를 적용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“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”(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고시 :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-586호(2020.12.24.),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 결정 공고 :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0-3502호(2020.12.24.))를 따른다. ※ 「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14조(우수건축자산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) 및 제26조(한옥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)는 별도 적용
	익선 지구단위계획 구역				
	인사동 지구단위계획 구역				
	운현궁주변 지구단위계획 구역				
	경복궁서측 지구단위계획 구역				

③ 지구단위계획 민간부문 시행지침

○ 역사문화적 건축물 및 장소의 보전·활용 계획 결정(신설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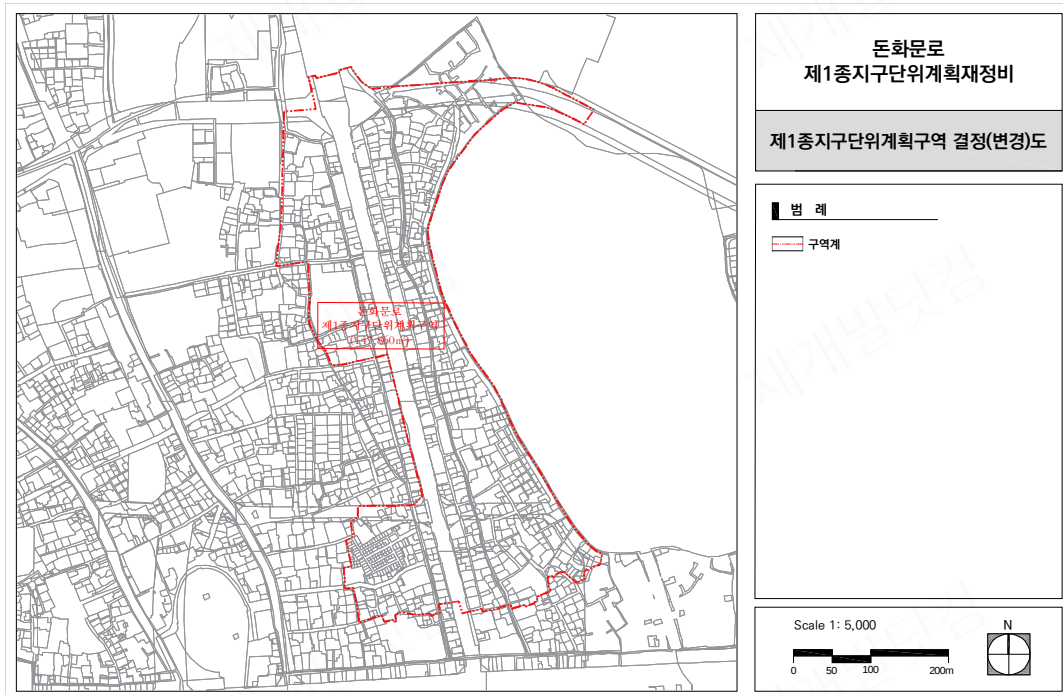
구분	구역명	기정		변경	
		적용지역	계획내용	적용지역	계획내용
한옥 등 건축자산 보호 및 활용	돈화문로 지구단위계획 구역	-	-	지구단위 계획구역	- 한옥 등 건축자산이란 「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대상을 말하며, 본 구역에서는 “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(돈화문로 일대 등 8개 한옥밀집지역)”의 한옥 등 건축자산을 대상으로 한다. -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한옥 등 건축자산 보호·활용 시 「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1조(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건축물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)에 근거하여 완화를 적용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“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”(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고시 :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-586호(2020.12.24.),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 결정 공고 :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0-3502호(2020.12.24.))를 따른다. ※ 기존 지구단위계획에도 불구하고, 한옥 등 건축자산 보호·활용 시에는 구역별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을 따름 ※ 「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14조(우수건축자산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) 및 제26조(한옥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)는 별도 적용
	익선 지구단위계획 구역				
	인사동 지구단위계획 구역				
	운현궁주변 지구단위계획 구역				
	경복궁서측 지구단위계획 구역				

III. 관계도면 : 변경 없음(붙임 참조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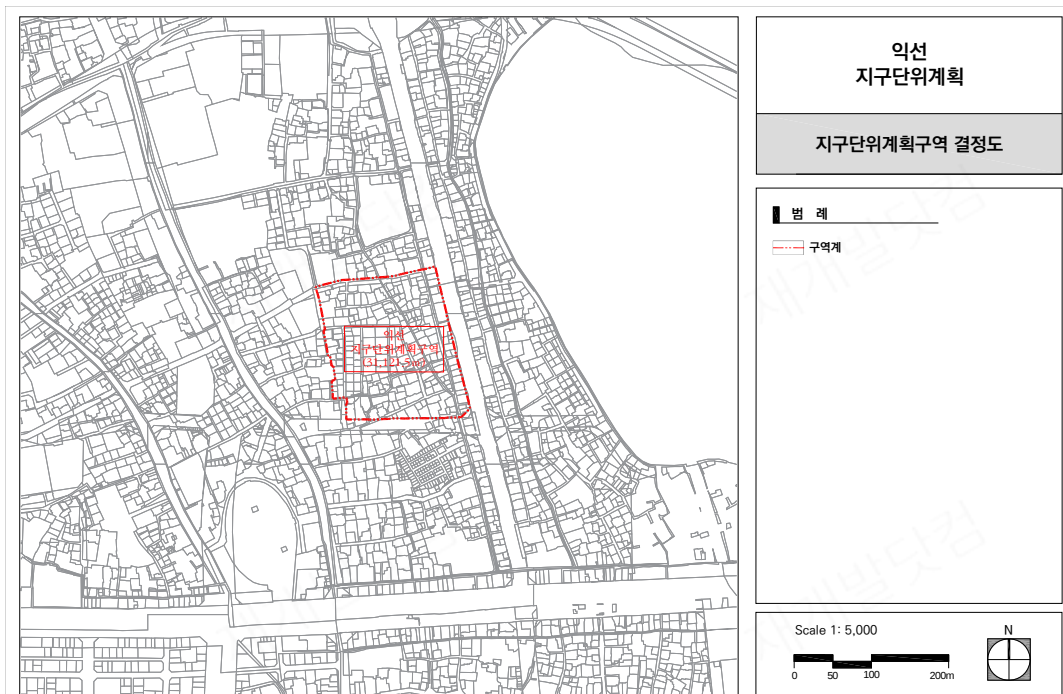
IV.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해 서울시청 한옥건축자산과(☎02-2133-5584) 및 종로구청 건축과(☎02-2148-2814)에 관련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.

[붙임] 관계도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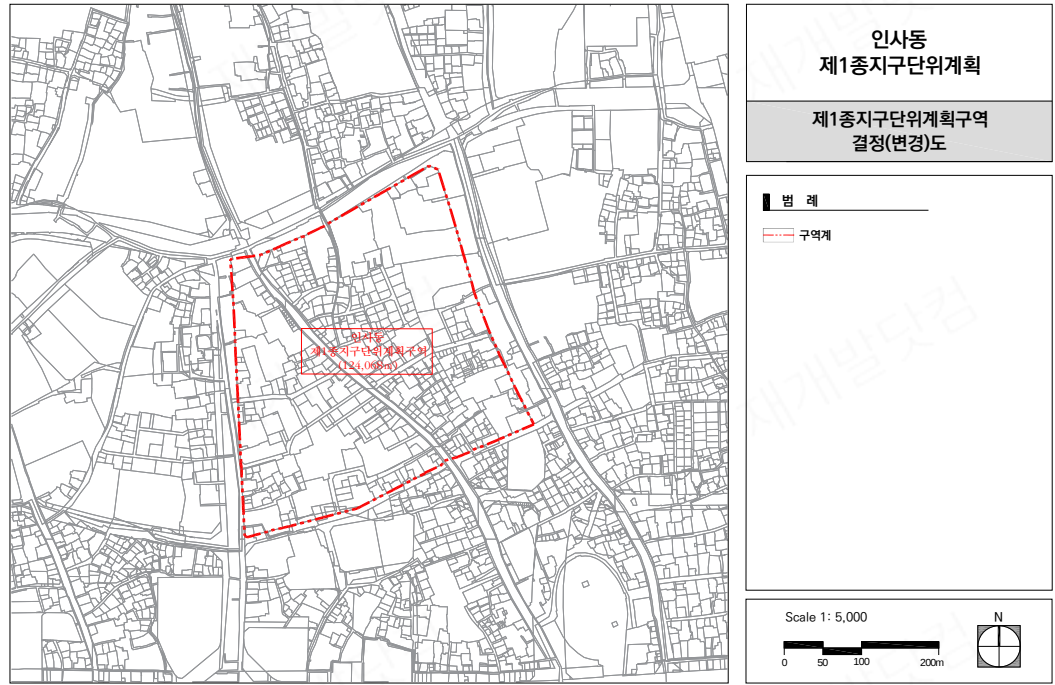
1. 돈화문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(변경없음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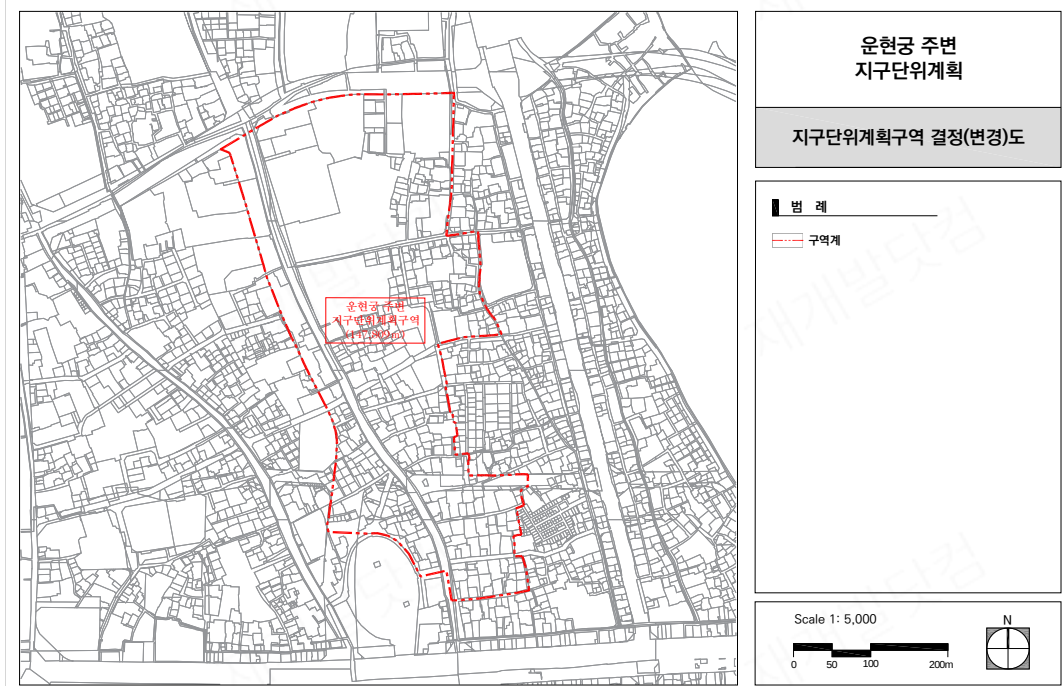
2. 익선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(변경없음)



3. 인사동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(변경없음)



4. 운현궁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(변경없음)



5. 경복궁 서측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(변경없음)

